

(하도급)계약일반조건

제1조(기본원칙)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일반조건, 하도급계약서, 부속협정서, 개별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개별약정의 내용이 계약일반조건과 상충할 경우 개별약정의 내용이 우선한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개별약정의 내용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제2조(정의)

1.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 2) “원부자재”라 함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 부원료 등을 말한다.
 -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기일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 5) “불가항력”이라 함은 화재,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사쟁의, 파업은 불가항력 사유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6)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정의 이외의 용어 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개별약정 및 특수조건)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개별약정을 할 수 있고, 이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
2. 개별약정 내용의 일부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로 정할 수 있다.
3. 본 계약이 하도급대금 연동의 적용대상인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연동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등 연동계약서'를 체결한다.
 -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연동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등 미연동계약서'를 체결한다.

제4조(목적물의 제조 등)

수급사업자는 계약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 용역을 수행한다.

제5조(목적물 및 단가)

1. 목적물(계약물품) 및 계약금액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2. 단가는 수량,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부산물의 수량 및 가격변동,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단가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3. 제2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송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4.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후 가단가를 적용하며, 가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 결정시 정산한다.

제6조(계약이행보증금)

1.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계약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일 직전 1년 동안의 거래금액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함)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1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1) 현금
 - 2)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상장유가증권
 - 3)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4) 이행보증 보험증권
 -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기타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2.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평가결과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는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 제출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써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본 항의 위약벌과 별개로 원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조지시서의 교부)

1.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물 납품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지시서 또는 생산의뢰서(명칭을 불문하고 제조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서면을 말하며, 이하 '제조지시서'라 한다)를 서면(MES를 통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으로 교부할 수 있다.
2. 수급사업자는 제조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며, 원사업자의 해석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한다. 작업표준서와 제조지시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은 제조지시서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조지시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열람·대여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이 제조되기 전까지 그 제조에 필요한 제조지시를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변경된 가공업무 및 수량을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제8조(사급재의 제공)

1. 원사업자는 품질유지, 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목적물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부품, 반제품, 기구, 용기, 포장 등(이하 '사급재'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사급재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제공 여부, 사급재의 품명, 수량, 지급일시, 장소 및 대금지불방법 등을 협의하여 개별약정으로 정하고,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급재의 경우 전액 단가에 반영하며, 그 대금 및 그 지불방법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수급사업자는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한다. 만일, 사급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제공하거나, 처리방법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한다(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제공한다).

4.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5.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사급재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부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원부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원부자재의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2) 원사업자가 원부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6.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사급재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 그 대금지급은 목적물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이후로 한다. 이 경우 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본 조 제2항에 따른다.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사급재를 유상으로 제공한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사급재를 구입한 상태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는 당초 자신이 구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8. 양 당사자 간에 목적물 제조를 위해 특정 사급재를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후에 수급사업자가 다른 원부자재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는다.
9. 원사업자는 제8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무상 사급재의 경우 남은 자재 및 재활용 가능한 자재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르며, 처리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비용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의 하에 정한다.
11. 수급사업자는 공정진행 중 사급재에 대해 불량을 발생시키거나, 사급재로 인해 목적물의 불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량 발생에 대한 책임은 그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기인된 사고 등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사급재의 사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급재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계약)

1. 무상 제공된 사급재(이하 '무상 사급재'라 한다) 및 이것으로 제조한 제품의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유상 원부자재 등의 소유권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을 때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2.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재 중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 등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원래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사급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3. 제2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사급재의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10조(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

1.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금형, 기계, 장비 및 기구류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그의 비용으로 투입한다.
2. 원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등 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기타 영업비밀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2항에 의한 설비 등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경우 품명, 수량,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대여기간, 보관, 반납 등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원사업자는 해당 대가를 반영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을 산정한다.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설비 등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제23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 등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설비 등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구입 또는 사용대가는 원사업자 자신이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제11조(양도, 대여, 승인된 사급재,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1.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소유하는 사급재, 무상 사급재로 제조한 제품 및 지식재산권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급재, 무상 사급재로 제조한 제품 및 지식재산권 등을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사급재 또는 무상 사급재로 제조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원사업자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4.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사급재 또는 무상 사급재로 제조한 제품을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원사업자 소유의 원부자재, 무상 사급재로 제조한 제품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건의 보관 장소를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사업자는 원부자재 등을 양도받아 대금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도 제5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한 목적물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사업자는 사급재, 무상 사급재로 제조한 제품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지급·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 반환해야 한다.
8.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부자재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9. 원사업자는 원부자재 등 또는 무상 사급재로 제조한 제품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원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물건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원사업자가 지정한 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시험검사)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급할 목적물이 발주서 및 제조지시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험검사방법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3.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검사에서 원부자재 등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공정의 시험검사에 원사업자가 지정한 검사원을 종사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2조의2(중간검사)

원사업자는 제조 위탁한 목적물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제조 과정에 원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공정·품질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3조(품질보증 등)

1.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약에서 지정된 사양,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 및 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등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에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작업의 일시중지 요청)

1.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작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의 요청으로 작업의 전부나 일부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납기를 연장하여야 한다. 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작업의 전부나 일부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현장대리인)

1.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상 업무 이행에 있어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원사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고, 개별 주문 사항을 처리하고, 또한 이 계약상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를 관리하며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를 선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맡게 한다.
 - 1) 이 계약상 업무 이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및 업무조정
 - 2)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교육, 근태, 안전, 파업, 태업, 규율질서 유지 등에 대한 관리업무
 - 3) 기타 이 계약상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관한 원사업자로서 주문 지시 등 권한의 행사를 수급사업자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이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의 성명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4. 원사업자는 선임된 현장대리인이 이 계약을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서면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하도급 금지)

1. 수급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 재위임, 재위탁 등(이하 '재하도급'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 1) 하수급사업자와 체결하는 거래계약서
 - 2) 과업범위 및 과업물량
 - 3)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
2. 수급사업자가 제조할 품목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만일 제3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대체하거나 직접 제조한다.
3.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제17조(납품조건)

1. 수급사업자는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시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을 납품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을 교부한다.
3. 수급사업자는 납기 지연, 수량 과부족 등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 예정일을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경우,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명확히 하면, 원사업자가 제3항에서 최대한 일정 시기까지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납기 변경이나 지체책임 면제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납기 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제3항이 원사업자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상표 표기 및 포장)

1.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할 경우에 목적물의 식별이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가능한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포장방법 사용에 노력한다.
2.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할 경우 원사업자와 합의한 상표의 표기, 포장시방, 포장규격, 입고 태그 부착, 등 세부적인 포장 방법을 준수한다.

제19조(검사, 인수 및 이의신청)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받은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조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3.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5. 원사업자는 검사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6. 목적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10일 이내에 검사가 불가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8.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9. 제8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재검사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1.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거나 불합격사유를 보완하여 재납품할 수 있다. 불합격사유를 보완하여 재납품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협의하여 재작업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제19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부족 또는 불합격품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한다. 단, 원사업자가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상,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조건부 합격으로 수령할 수 있다.
3. 수급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4.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원사업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 과납품을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시중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 시중 거래선에 판매함으로써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6. 불합격품이 원사업자가 지급한 원부자재 등의 불량에 의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제21조(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19조에 의하여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를 위해 일부 목적물만 납품된 경우에는 나머지 목적물은 원사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된다.

제22조(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2.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는다.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대금의 지급 및 지불방법 등)

1. 원사업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단,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수행의 진척에 따라 대금 등을 받았거나, 수행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하도급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4. 원사업자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6.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 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동반성장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7.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8.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 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제24조(대금의 상계 또는 공제)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원재료 등의 대금 및 기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계 또는 공제는 상계 또는 공제할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5조(감액금지)

1. 원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 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 3) 감액금액
 - 4) 공제 등 감액방법
 -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6조(채권. 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7조(비밀유지)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기술자료요청)-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과 **별도로 기술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교부하고, 이와 함께 **기술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 이외의 사항)

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30조(계약의 변경)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사양변경, 작업물량, 부산물 발생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조정에 관해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3.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모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 사유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수급사업자의 공정준수 등 책임)

1. 수급사업자는 공정준수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수급 및 인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정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자는 그 책임과 판단으로 도급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선발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주문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완성된 작업에 대한 보전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사업자는 소속 근로자가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근로관계법령상 책임)

1.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준수하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의 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해자에 대한 요양관리, 보상관리, 합의, 소송, 재해처리를 위한 제반 경비, 민·형사상 책임의무 이행을 포함한 업무처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영역으로 한다. 단, 원사업자의 의무 또는 원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주체 및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다.
3. 수급사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수급사업자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자 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보험료 납부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규율유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계약 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질서규율 및 풍기유지에 책임을 지며, 질서있는 업무처리를 노력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의 신용을 유지하고 원사업자 및 그의 거래처 등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수급사업자의 금지사항)

1.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는 계약의 업무수행 중 원사업자의 또는 제3자의 상품, 비품, 설비 등의 무단 반출, 분실, 화재유발 등으로 인하여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되며, 그로 인해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기인된 사고 등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사이의 분쟁을 이유로 계약상의 도급업무 및 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수급사업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34조의 특칙: 폭행, 협박 등의 금지)

1. 계약의 당사자들 및 그 임직원은 상대방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욕설,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민, 형사상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계약의 당사자들 및 그 임직원은 상대방의 사업장 내에서 폭언, 폭행, 협박, 욕설,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민, 형사상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3(제34조의 특칙: 청렴계약 및 부패행위 금지)

1. 이 계약의 수급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이 계약의 입찰·낙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전반에서 원사업자, 원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원사업자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원사업자를 위하여 이 계약의 입찰·낙찰·계약 체결 및 이행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관계자’라 한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그 밖의 재산상 부당한 이익(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금품 등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알선,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2. 수급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3자를 통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 위반으로 본다.
3.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입찰·낙찰·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금품 등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알선, 청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4. 원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품 등이나 부정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이를 거절해야 하며, 원사업자의 감사 부서 또는 지정된 제보 채널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본 항의 제보나 신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수급사업자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1. 수급사업자는 노사간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쟁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노사분규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사업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사업자는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때까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서 원사업자 또는 제3자가 계약상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개선제안에 대한 상호협력)

1. 수급사업자는 위탁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다.
2. 수급사업자의 제안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에 상당하는 효과를 배분한다.
3. 수급사업자의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지식재산권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8조(손해배상)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39조(지체상금)

1. 수급사업자는 납기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체 1일에 대하여 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목적물의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3.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위탁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 3) 기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 1) 납기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 납기를 초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납기의 익일부터 실제 납품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40조(하자담보책임)

1.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검수합격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면, 하자보수보증기간 이후라도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기 내에 이행해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3. 원사업자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원부자재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급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을 위하여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험증권이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예치한다.

제41조(제조물 책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품목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그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방어에 적극 협조한다. 단, 해당 목적물의 결함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제42조(감가 및 환불처리)

1.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이 합격처리 되었을 경우라도 사용 중 품질 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기술자를 파견하여 원사업자와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하여 귀책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2. 원인 조사결과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즉시 원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대체품을 납품하거나 대가를 변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3. 원사업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이라도 필요시 수정, 보완하여 합격처리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계약금액에서 감가처리 할 수 있다.
4. 감가의 산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제43조(수급사업자의 정보 제공 및 ESG 협조 등)

1. 원사업자가 국내외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예컨대,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원사업자가 국내외의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예컨대, EU CSDDD 등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대응을 위한 경우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청시 원사업자의 ESG 평가에 즉시 참여하고 원사업자의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즉시 이 계약,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조세채납처분을 받거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처분 또는 결정이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는 경우로서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7)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기타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객관적으로 계약을
이행할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만 계약의
목적물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제8호의 사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제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수급사업자가 약정한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목적물 제조를
착수하지 않거나 제조를 거부·지연하여 납품기한 내에 제조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수급사업자의 인원, 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27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각 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제34조의2를 위반한 경우
 - 7) 수급사업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
3.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사업자와
발주자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로서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해지 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이 계약 해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자료 또는 지식재산 등을 반환 또는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연 6%)를 더하여 반환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이 있는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한다.
6.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목적물 또는 이미 납품한 목적물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7.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해지되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지출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손해액을 협의 및 배상한다.
 - 1) 원부자재 구매 비용. 단, 수급사업자는 해당 원부자재를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원부자재 구매 비용 및 납품을 위한 운송비용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원부자재를 납품한 날로부터 60일 내 지급한다.
 - 2) 기타 수급사업자가 해지되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
8.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9.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제, 해지 및 종료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 1) 제11조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2) 제27조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3) 제37조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 4) 제38조에서 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제45조(권리포기 간주 불가)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권리의 포기 또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의 면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46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본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개정이력

제·개정번호 (Rev. No)	제·개정일자 (Rev.Date)	주요 제·개정내용 (Rev. Note)	비고
0	2024.01.05	- 계약일반조건 신설/등록	
1	2025.01.01	- 제 40조 제1항 : 하자보수보증기간의 명확한 의미 추가 - 제 43조 :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신설 ▶국내외 법령 준수 등을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 제 44조 10항 :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추가	
2	2026.08.11	- 제34조의3 : 제34조의 특칙 ‘청렴계약 및 부패행위 금지’ 신설 - 제43조 : ‘수급사업자의 정보 제공 및 ESG 협조 등 조항’ 신설 - 제44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 개정	